
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

2020. 2. 20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그간 추진내용 및 개선 필요사항	2
III.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	4
1. 점검 및 단속 강화	5
2. 화물차운전자의 운전문화 개선	6
3. 안전장치 등을 통한 차량안전 강화	7
4. 화물 적재안전 확보	8
5. 안전의식 확산	10
IV. 추진 일정	11
※ 참고: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 추진	12

□ 화물자동차는 사고 시 대형사고로 확대 가능성, 높은 치사율* 등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은 실정

* ('16-'18) 치사율(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): 전체평균 1.87 vs 사업용화물차 3.85

○ 특히, 사업용 화물차는 장시간 운행에 따른 **졸음운전**, 야간 **과속·난폭 운전**, 낙하물 사고 등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필요

* 차량 1만대당 사망자('18) : 승용차 0.98 / 화물차 2.49 / 사업용 화물차 5.37

* 고속도로 화물차사고 주요원인(도로공사): 졸음 41.9%, 주시태만 33.5%, 과속 8.2%

* '16-'18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 78.8만건, 낙하물충격 사고 129건, 사망 2명

□ 그간의 대책을 통해 **졸음·난폭·과속운전** 등에 대한 **안전규정 강화**, **첨단안전장치 보급**, **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확충** 등을 추진

○ 사업용 화물차의 과로 운행을 야기하는 만성적인 저운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'**화물차 안전운임제**'를 도입('18.4), 운영('19.12~) 중

○ 운수업체 교통수단안전점검('18.1~), 음주단속 강화('19.6~), 합동 점검('19.7~) 등 **단속·점검도 강화하면서 사망자 감소에 성과***

*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(명) : ('17) 4,185 → ('18) 3,781 → ('19) 3,351(잠정, 집계중)

사업용 화물차 사고 사망자(명) : ('17) 255 → ('18) 251 → ('19) 208(잠정, 집계중)

□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**화물차 교통안전**을 **확보**하기 위해서는 시행중인 정책들의 **효과**를 한층 **극대화**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

① 그간 정비된 안전규정들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**단속·점검 체계**를 효과적으로 정비

② **안전운임제**를 성공적으로 정착 → 운전자에게 선진국 수준의 휴식 시간 부여 → **졸음·과로 운전** 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

③ 모바일 운행기록장치(m-DTG) 등 **첨단 교통안전장치**의 확산·활용을 통해 **미래 교통안전정책**의 기반을 마련

1. 그간 추진내용

◆ '17년 이후 여러 차례 안전대책 마련* → 휴식시간 확보, 운수업체 관리 강화, 휴게시설 확충, 안전장치 보급 등에 집중

*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('17.7), 교통안전종합대책('18.1) 등

□ 운수종사자 및 사업자 관리 강화

○ 연속 운행시간, 최소 휴게시간 규정을(4시간 운행 후 30분 휴식) 도입하고, 운행기록장치(DTG*)를 활용한 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

* DTG(Digital Tacho Graph) : 차량속도·기속도·위치·주행거리 등 운전정보 전반을 저장하는 장치

○ 운수업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기준을 강화(사망 1명 또는 중상 6명 →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)하고, 고령자(65세 이상)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

□ 인프라 개선 및 확충

○ 운전자 과로 및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국도·고속도로 졸음쉼터, 화물차 휴게시설(휴게소·공영차고지) 등 지속 확충

* 졸음쉼터(개소) : ('16) 266 → ('17) 292 → ('18) 306 → ('19) 317

화물차 휴게시설(개소) : ('16) 43 → ('17) 47 → ('18) 53 → ('19) 56

○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과속카메라 설치, 미끄럼방지 포장, 돌출차선 및 노면 홈파기, 차선 도색 등을 확대

* ('16~'18)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42개소 완료(미끄럼방지, 차선도색 등)

□ 차량 안전장치 보급

○ 화물차(총중량 20t 초과)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장착 비용을 지원(~'19년 12.9만대 장착),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도 강화

○ 비상자동제동장치·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을 확대(총중량 20톤 초과 신규차량 → 총중량 3.5톤 초과 신규차량)

☞ 지난 2년간('17~'19) 사업용 화물차 사망자 18.4% 감소(255 → 208명) 성과가 있었으나, 위험해소·안전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

2. 개선 필요사항

□ 화물차 교통안전 규정의 실질적인 단속강화 필요

- 휴식 준수, 적재물 안전, 안전장치 장착 등 여러 규정*이 있으나, 전담 인력이 있는 경찰 및 과적단속원에 비해 지자체 단속은 미흡

* 도로교통법 위반 → 경찰 단속 / 도로법 위반 → 과적단속원 단속 / 화물차 운수사업법 · 교통안전법령 · 자동차관리법 위반 → 지자체 실무자 단속

- 인력부족을 감안해 과적단속원 등 기존 인력의 단속권한 확대 필요

□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시간 확보를 통해 졸음운전 방지 필요

- 운행거리·시간이 긴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, 집중력 저하 등 과로로 인한 사고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(고속도로 졸음·주시태만 사고 75%)

- 장시간 · 저운임 운행구조 개선을 위한 안전운임제 도입 성과가 교통안전 효과로 연결되도록 제도정착, 휴식시간 보장 노력 필요

□ 첨단안전장치의 보급 확대 및 실효성 제고 필요

- 운행기록장치(DTG)는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활용이 미진하고, 최고속도제한장치·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임의 해제*하는 사례 발생

* 최고속도제한장치(≤ 90km/h)를 해제한 화물차가 경찰 과속단속에 적발(3년간 3만건)

- 모바일 운행기록장치(m-DTG)를 확산하여 자료 제출율과 활용도를 높이고, 안전장치 정상 작동을 위한 감독체계도 보완 필요

□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 필요

- 화물차 적재불량, 적재물 낙하로 인해 빈발하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단속·제재를 강화하고 안전한 적재방법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

☞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일 수 있도록 그간 정비된 안전규정, 안전장치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

Ⅲ

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

목표	사업용 화물차 사고사망자 절반 수준으로 감축 (‘19) 208명 → (‘20) 165명 → (‘21) 131명 → (‘22) 104명
추진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점검·단속 강화로 안전운전 유도 ◆ 첨단안전장치 활용으로 사고를 방지 ◆ 운전자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



중점과제	1 [공공] 점검 및 단속 강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적단속원 등의 단속 권한 확대 ○ 관계기관 합동단속의 실효성 강화
	2 [사람] 화물차운전자의 운전문화 개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정운임 보장으로 과속·과로운전 예방 ○ 휴식시간 보장, 과로운전 방지 환경 조성
	3 [차량] 안전장치 등을 통한 차량안전 강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DTG 운행기록 제출 및 활용 확대 ○ 차로이탈경고장치·최고속도제한장치 실효성 제고 	
4 [화물] 적재안전 확보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재불량에 대한 제재 강화 ○ 폐쇄형 적재함 설치 유도 	
5 [문화] 안전의식 확산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육 및 캠페인, 홍보 강화 ○ 안전운전자 인센티브 확대 	

1. 점검 및 단속 강화

□ 과적단속원 등의 단속 권한 확대

○ (현황) 화물차 안전운행 규정을 집행할 단속인력 부족

법령	안전규정	단속주체	전담 단속인력
화물차법	화물고정, 휴식시간 등	지자체	거의 없음
교통안전법	DTG, 차로이탈경고장치 등	지자체	거의 없음
자동차관리법	자동차안전기준 등	자동차안전단속원	13명(교통안전공단)
도로법	총중량·축중량, 규격	과적단속원	1,775명(국토청·도공·민자도로)

○ (개선) 과적단속원·자동차안전단속원의 단속권한을 소관 법령에서 타법에 따른 '화물고정, 각종 안전장치 이상여부 등'까지 확대

* 화물차법·교통안전법·자동차관리법 등 화물차안전 3법 개정추진('20.12)

* 과적단속원 통합단속 시 화물고정불량(화물차법, 운행정지 30일),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(교통안전법, 과태료 50만원) 등 적발 → 지자체 통보·처분

- 타법 집행에 필요한 담당자 교육을 시행하고, 인력이 부족한 자동차 안전단속원은 단계적으로 인원을 보강하여 단속역량을 강화

□ 관계기관 합동단속 강화

○ (현황) 경찰,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(고속도로 월 1회)을 실시중이나, 대부분 계도 위주의 단속에 그쳐 효과가 제한적

* ('19 합동단속) 도로법 위반 644건, 도로교통법 위반 71건, 자동차관리법 위반 48건 단속

○ (개선) 테마별 집중 단속대상*을 선정해 효과를 극대화하고, 합동 단속을 확대(월 1회 → 2회), 불시점검도 병행하여 단속·처벌 강화

* 예 : (1월) 과적·적재불량, (2월) 속도제한장치, (3월) 차로이탈경고장치, (4월) DTG 등

□ 상습위반 화물차에 대한 심야 통행료 할인 제한

○ (현황) 영세 화물운전자 지원, 교통량 주·야간 분산을 위해 모든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일괄 심야할인 중

* 심야시간(21:00-06:00) 운행비율 70% 이상 통행료 50% 할인, 20~70%는 30% 할인

○ (개선) 과적·적재불량 등 상습위반차량(연 2-3회)은 한시적 할인제외('21)

2. 화물차운전자의 운전문화 개선

□ 장시간·저운임 운행구조 개선을 위한 안전운임제의 성공적 정착

- (현황) 차주의 적정소득을 보장하여 과로·과속을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'안전운임제' 도입('18.4 화물차법 개정)
 - 안전운임제 시행을 위해 화주, 운수사업자, 차주 대표와 협의를 거쳐 '20년 화물차 안전운임* (컨테이너·시멘트) 고시('19.12.30)
 - * 안전운임 적용품목인 컨테이너·시멘트에 대해 시장운임 대비 약 12% 운임 인상 (참고원가 적용품목인 철강·일반화물은 '20.4월까지 '20년 원가 고시 추진)
- (개선) 안전운전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* 운영('20.1~) 및 위반행위 단속, 안전운임 성과분석** 등 제도정착 노력
 - * 지급위반 신고접수, 사실관계확인, 지자체 통보, 처분사실 확인(교통안전공단에서 설치)
 - ** 성과분석 결과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, 제도 운영기한('20~'22) 검토 시 활용

□ 화물차 운전자 휴식의무 규정의 실효성 확보

- (현황) 화물차 4시간 연속운전시 30분 휴식의무*가 도입됐으나('19.1), 제도의 실효성 문제 제기(실제 준수여부 미확인, 단속 0건)
 - * 벌칙 : 위반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10일/20일/30일
- (개선) 규정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 생리 등을 고려한 적정 운전·휴식시간을 재검토*하고, 단속에 필요한 세부기준** 수립
 - * (예시) 2시간 운전-15분 휴식, 3시간 운전-20분 휴식 등
 - * 연속운전 시간 산정기준, 휴식의 인정 범위, DTG를 통한 단속 기준 등

□ '과로운전 의심 차량' 모니터링 및 교육·홍보 강화

- (현황) 개인사업자가 많은 화물운송시장에서 장시간 운전자 다수
 - * ('19조사) 컨테이너화물차주 주65시간, 시멘트화물차주 주84시간 근무(대기시간 포함)
- (개선) 유가보조금 수급정보 등을 분석하여 장시간 운전으로 교통안전 저해가 우려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교육·홍보
 - * 교육·홍보 대상 예시: 동일 등급 화물차 중 연료사용량 상위 3% 화물차 운전자

3. 안전장치 등을 통한 차량안전 강화

□ DTG 운행기록 제출 활성화

- (현황) 1톤 초과 화물차 DTG 장착을 의무화하여('14) 운전습관 개선, 교통수단안전점검 등에 활용 중이나 기록제출*은 미흡(제출률 30%)

* 화물차는 교통행정기관(지자체)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운행기록 제출 (반면, 노선버스는 주기적 제출 의무화로 운행기록 제출률 100%)

- (개선) 화물차 DTG 운행기록의 제출을 의무화하고, 동 자료를 안전정책의 데이터 기반으로 적극 활용

- 운행기록 제출 편의를 개선하고 데이터 수집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무선 통신 기능을 갖춘 모바일 DTG 보급을 확산*

* 유가보조금 카드적립금(약 320억원+年50억원)을 활용한 모바일DTG 장착 지원방안도 검토

- 수집한 운행기록은 운전자별 맞춤형 안전교육, 화물차 위험운행 지역의 교통시설 개선 및 단속장비 확충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

□ 최고속도제한장치·차로이탈경고장치 해제·조작 방지

- (현황)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*,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의무화('20.1)에 따라 신속한 제도 정착 필요

*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추정 차량 3년간 3만건...단속 2,689건 불과('19.10.4 언론보도)

- (개선)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·조작에 대한 제재를 강화*하고('20.7), 경찰 과속적발→자동차검사결과에 따라 규정을 엄격히 집행

* 화물차법에 따른 제재(1차/2차/3차) : 운행정지 20일/30일/50일 → 30일/50일/감차

- 차로이탈경고장치 해제·조작* 시 제재규정을 신설하고('20.7),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장치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도 포함('20.2)

* '미장착'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시행 중(50~150만원, 교통안전법 시행령, 12.3)

□ 위험물 운송차량 안전 강화

- (현황) 유해화학물질·고압가스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 모니터링을 위해 단말기 장착 사업을 추진 중(총 10,172대, ~20.12)
- (개선) 기상상황 등에 따라 차량 내 단말기에서 경고문구 표시, 알람음 송출 등으로 위험구간 진입 전 감속(악천후시 최대 50%) 유도

□ 노후 화물자동차 차량관리 강화

- (현황)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, 정기검사 부적합차량에 대한 과태료(최대 30만원) 이외에는 노후 차량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
 - * 버스(9년), 택시(4~7년)는 차령을 정하고, 자동차 검사 통과시 2년까지 연장 허용
- (개선) 차령 13년차 이상 차량은 자동차 검사 미통과시 운행제한
 -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차량 운행 시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 상 영업 정지·감차 등 처분('19.11월 법 개정안 발의)

4. 화물 적재안전 확보

□ 적재불량 제재 강화 및 안전적재 유도

- (현황) 화물차 적재불량은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 요소이며, 실제 화물낙하로 인한 사고도 빈번('16~'18 고속도로 129건)
 - 도로교통법(경찰)과 화물차법(지자체)에 적재불량 처벌규정*이 있으나, 적재안전 개선이 미흡하며, 특히 화물차법 단속은 매우 저조**
 - * (도로교통법)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시 운전자 범칙금 4~5만원, 벌점 15점 (화물차법) 적재화물 이탈방지 의무 위반시 운행정지 30~90일(과징금 60만원)
 - ** 연간 적재불량 단속 : 도로교통법 약 2.7만건('14-'16 평균) vs 화물차법 100건 미만(추정)

- 화물차법 시행규칙에 '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'^{*}이 규정되어 있으나, 구체성이 부족해 실제 적용이 어려움

*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·체인·벨트·로프 등으로 '충분히' 고정해야 함, (나무)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적재, (자동차) 화물이 이탈하지 않도록 적재부에 고정

- 화물 낙하방지에 효과적인 폐쇄형 적재함은 설치가 저조^{*}하나, 해외사례, 다양한 화물유형 등 감안 시 의무화는 곤란한 실정

* CCTV를 통한 화물차 도로통행 표본조사 결과 국내 27% vs 일본 58%(17. 교통안전공단)

○ (개선) 적재불량 단속 및 벌칙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, 폐쇄형 적재함 설치 시에는 인센티브 제공

① (벌칙 강화) 화물고정 불량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(운행정지 90일 → 감차, 과태료 50 → 100만원) 형사처벌^{*} 신설, 신고포상제^{**} 도입

* (일본사례) 적재기준 위반 시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 벌금

** 화물차법 신고포상 대상(現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,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)을 '적재불량'까지 확대 →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신고

② (구체적 기준 마련) 화물 종류별로 보다 세부적·구체적인 적재 방법을 규정한 '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관리 지침' 마련('20.6)

* (일본) 로프 두께별로 인장력을 규정하는 등 세부적인 적재방법 규정

③ (단속정보 공유) 경찰 적재불량 적발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도로교통법의 범칙금·벌점에 화물차법의 운행정지도 병과

* 단속정보 공유사례 : 도로법 운행제한위반(과적) 단속정보(국토부 → 경찰청), 도로교통법 과속 단속정보(경찰청 → 국토부·교통안전공단)

④ (교육·인센티브) 보험사 등과 협의하여 폐쇄형 적재함 설치 시 자동차보험료등 할인을 추진하고, 적재함 설치비 용자상품도 개발

- 화물차 운전자 대상 적재안전 교육을 강화하고, 화물업계와 함께 폐쇄형 적재함 설치 캠페인, 공동구매 행사 등 추진

5. 안전의식 확산

□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

-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시, 눈·비 악천후 시 감속운행, 터널 등 위험 구간 주의의무 등을 사고사례 중심으로 집중 교육해 경각심 고취
 - 협회를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문자메시지도 주기적으로 발송
 -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시간 확대(年4→8시간)
 -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관리강화를 위하여 교육현황을 연수기관 → 시·도 → 국토부에 제출토록 의무화(화물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대기 중)
 - 안전교육 미이수 제재조치*가 엄밀히 이루어지도록 관리 강화
- * 안전교육 미이수자(과태료 50만원),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사업자(사업 일부정지 10일)

□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·홍보 확대

- 정부·지자체·유관기관 합동으로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, 사업자단체와 안전운송 결의대회를 통해 안전의식 전파
 - * 국토부, 경찰, 지자체, 사업자단체 등 참여 화물차 안전운전 결의대회, 캠페인 개최(3월~)
- 화물차 교통안전 슬로건을 개발하고,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
 - * 슬로건(안) : ‘화물의 무게만큼 똑심 있게 안전운전’, ‘화물만큼 안전책임도 무겁습니다.’, ‘사람이 안전해야 화물도 안전합니다.’, ‘화물차 안전운전, 당신과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.’ 등

□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및 안전운전자 인센티브 확대

- 교통안전 우수사업자(교통안전법) 선정 대상을 버스·택시회사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까지 확대(시행규칙 개정)
- DTG 데이터 기반으로 안전운전자를 선발하고, 인센티브 강화
 - 현재 추진 중인 모범 화물운전자 포상(최대 500만원)을 확대 개편하여 포상인원 증원 및 상훈 상향조정 등 검토('20~)
 - 안전운전자에게 보험료(공제료) 할인, 차량 구매 할부금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보험·금융업체와 함께 추진

IV

추진일정

추진과제	일정	비고
1. 점검 및 단속 강화		
① 과적단속원·자동차안전단속원 단속권한 확대	'20.12 3법 개정	국토부
② 관계기관 합동단속 강화	'20.2~	국토부 경찰청 지자체
③ 상습위반 화물차 심야통행료 할인제한	'20.12 시행령 개정 '21 시행	국토부
2. 화물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		
①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영(계속), 안전운임제 성과분석(매년)	'20~'22	국토부
② 화물차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적정성 검토 및 세부기준 마련	'20.8 시행규칙 개정	국토부
③ 과로운전 의심 운전자 모니터링, 교육·홍보	'20.2~	국토부
3. 안전장치를 통한 차량안전 강화		
① DTG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제도 도입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시행 모바일 DTG 보급(재원, 통신방식 등 검토 후)	'20.8 시행령 개정 '21~ 단계적 시행 '20.7~	국토부 국토부 국토부
②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조작 제재 강화 차로이탈경고장치 해제 조작 제재 신설 정기검사항목에 차로이탈경고장치 포함	'20.7 시행령 개정 '20.7 시행령 개정 '20.2	국토부
③ 위험물 운송차량 단말기 감속운행 정보제공	'20.4~	국토부
④ 노후 화물차 차량검사 미통과시 운행제한	'20.12 법 개정	국토부
4. 화물 적재안전 확보		
① 화물 적재불량 행정처분 강화 형사처벌 신설, 적재불량을 신고포상 범위에 포함	'20.3 시행령 개정 '20.12 법 개정	국토부
② 적재물 안전관리지침 마련	'20.6	국토부
③ 경찰 적재불량 단속정보 공유	'20.7~	국토부 경찰청
④ 보험료 할인, 적재함 설치비 응자상품 개발 적재안전 교육방안 마련 적재함 설치 캠페인 및 공동구매 행사(협회 협조)	'20.12 '20.5 '20.3~	국토부
5. 안전의식 확산		
①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위험물 운수종사자 교육시간 확대 교육관리 현황 관리 근거 마련	'20.2~ '20.6 시행규칙 개정 '20.6 법 개정	국토부
②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·홍보(슬로건 개발)	'20.3~	국토부
③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선정대상 확대 모바일 DTG 기반 안전운전자 대상 인센티브 확대	'20.8 시행규칙 개정 '20.6	국토부

□ 추진 배경

- 상주-영천 고속도로 47중 추돌사고('19.12.14) 등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도로관리 안전대책 마련

□ 주요 내용

① 결빙취약 관리구간 집중 관리

- 도로 순찰을 강화(4→6회)하고, 수시로 노면온도를 측정하고 응급 제설 작업 시행하는 등 예방적 작업 기준 강화
- 취약관리구간을 확대(193→403개)하고, 전담 관리팀 중점 배치

② 결빙취약 관리구간 안전시설 확충

- 도로살얼음 발생 예방을 위해, 자동 염수분사장치, 노면흡파기, LED 주의표지 설치('20년~) * 배수성포장, 도로열선 등은 시범 추진

③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

- 신속한 사고정보 전파를 위해, 스마트 CCTV 설치, VMS에 경광등·경고음 기능 추가 및 내비게이션을 통한 안내 확대 등 추진
- 도로안전만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, 도로관리기관 간 KSP 협업체계 구성을 통한 블록형 인력·장비 지원체계 구축

* KSP (Knowledge Sharing Program) : (용어) 경험 등을 공유하는 정책 컨설팅 사업모델

④ 악천후시 취약구간 통행속도 조정

- 도로관리기관이 기상악화 시 경찰청 협의를 거쳐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를 50% 이하로 감속토록 조정체계 구축
- 가변형 속도제한표지, VMS를 설치하여 조정된 제한속도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고, 취약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로 감속 유도

⑤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운전 홍보 강화

- 홍보 집중기간(12~2월)에 현수막·리플렛 등을 배포하고, TV·라디오 및 SNS 등을 활용하여 안전운전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